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 매뉴얼

Edited and translated by the Japan Support Center for Suicide Countermeasures
Published in August 2018

I 들어가면서

1. 매뉴얼의 작성 경위 및 목적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에 급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3만명을 웃도는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도에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되고 2007년에 『자살종합대책대강』이 마련된 이후, 범 국가적 차원으로 종합적인 자살대책을 시행해온 결과, 자살자 수가 1998년 이전 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살대책기본법은 자살로 인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과 자살 유가족 지원 및 자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종합적 자살 대책 요구에 따라 2006년 6월에 초당파 국회의원단이 중심이 되어 의원 입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살 대책은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이제는 「사회의 문제」로 널리 인식되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련단체, 민간단체, 기업, 국민 등 관계자들의 연계에 의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전개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의 시행 이전에는 극소수의 민간 단체에 의한 활동 외에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살대책기본법에서는 남겨진 친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살 유가족 지원이 처음으로 법률로 명시되었습니다. 시행 착오를 거듭하면서 2015년에는 모든 도도부현에서 자살 유가족 모임(자조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대책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 그동안 자살 대책이 크게 진전됐지만 선진국 중 일본의 자살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자살 대책을 지역 차원의 실천적 대책에 의한 삶의 포괄적인 지원으로 그 확충을 도모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대책기본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에서는 자살 대책이 「삶의 포괄적인 지원」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삶의 포괄적인 지원」으로 자살 대책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자살 대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 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 대책의 지침으로서 새로운 『자살종합대책대강』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 마련된 『자살종합대책대강』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1) 유가족 자조 그룹

등의 운영 지원, (2) 학교나 직장에서의 사후 대응 촉진, (3) 유가족의 종합적인 지원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 (4) 유가족을 접하는 공공 기관 직원의 자질 향상, (5)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제 4 자살 종합 대책의 당면한 중점 시책 9.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

이 매뉴얼은 『자살종합대책대강』에 따라 「삶의 포괄적인 지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조 그룹 등의 운영 지원 외에, 전국 어디에서나 입수할 수 있는 유가족의 종합적인 지원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학교와 직장에서의 사후 대응시 유의점,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된 공공 기관 직원의 의식과 대응에 대한 계발, 유자녀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자살 유가족 지원을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그 유의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2. 매뉴얼 사용 대상자

이 매뉴얼은 새로 마련된 자살종합대책대강(2017년 7월 국무회의 결정)의 내용을 토대로, 자살 유가족 및 자살 유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관점이나 유의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로 자살 대책에 관한 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 시정촌) 관계자, 학교, 직장, 지역 등에서 실질적으로 자살 대책 및 자살 유가족의 지원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도도부현, 정부령 지정 도시의 지역 자살대책추진센터 관계자
- 도도부현, 시정촌 직원
- 학교, 직장, 지역에서 자살 대책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자, 담당자 (교원, 직장의 관리자, 민생위원·아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 보건 의료 복지 관계자
-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등)
- 기타 : 자살 유가족과 접할 기회가 있는 자(경찰, 소방공무원, 장례업자, 종교 관계자 등), 자살 유가족 지원 활동과 관련된 자

3. 매뉴얼 이용시 유의사항

지역의 자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자살 유가족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 공공 단체나 관련 조직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과 사회 자원의 실정을 맞는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매뉴얼은 모든 유가족에 대한 획일적 대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II 본 편

1. 기본적 개념

(1) 자살 유가족이란?

「자살로 남겨진 사람들」¹ 중,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이전에는 주로 친족(혈족·인척)이었으나, 최근에는 친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약혼자나 내연관계에 있는 자, 친한 친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자살 유가족」이라 함은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유가족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분노, 후회, 죄책감, 부인, 혼란과 거절, 혹은 냉담 등 광범위한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 지원과 관련된 경우는 유가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자살은 적어도 주변 다섯 사람, 열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은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교나 직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대책기본법과 자살종합대책대강이 개정, 정비되어 자살 유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아직도 자살에 대한 편견이 있고, 자살 유가족에게는 고민이나 어려움, 괴로움을 상담할 상대도 제한되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자살 유가족이 처한 상황 및 직면한 과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남겨진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행동면, 생활면 등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로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자살에 대한 주변의 오해와 편견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남에게 말할 수가 없고 슬픔을 나눌 수 없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유가족으로서 법적인 문제나 다양한 절차에도 대응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이 매뉴얼에서는 자살종합대책대강에 따라 「남겨진 사람」이라는 표현 외에 「자살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자사의 표현은 권말의 Ⅲ. 참고자료 용어 1-1 자사·자살의 표현 p.14 참조.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남짓, 자살 유가족 지원 활동은 이전에 비하면 체계가 잡혔지만 앞으로 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자살 유가족 지원의 목표

자살 유가족 지원의 목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심리면·생활면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이 상속 문제를 포함하여 사후 법적 및 행정적 제반 수속 방법에 대해 유가족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도 하고 공공 기관이나 유가족 지원 관련 민간 단체에서 상담 창구를 소개하거나, 심리치료 전문가와 연결하는 등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밀착형 지원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 유가족은 각기 다른 과제를 안고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나 상황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살 유가족에게는 같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기에 「유가족끼리의 모임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조 그룹(self-help group) 및 지원 그룹(support group) 활동과 참여 가능한 기회와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자살 유가족 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자살 유가족 지원 방법으로 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의 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살 유가족이 많지 않아, 실정에 맞는 자살 유가족 지원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살 유가족 대응 시에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III.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1. 자살 유가족 대응 시 태도 p.15 참조). 또한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고립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유가족의 종합적인 지원 요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 균등화의 추진

(1) 사후 직후에 처리해야 할 절차 관련 정보 제공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수속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 감정이 강한 시기에 뱉아야 할 수속은 유가족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남겨진 친족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한 책자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III.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2. 동경의 미나토구와 이타바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p.16 참조). 남겨진 가족이나 친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일에는 장례식, 공문서 등의 명의 변경과 같은 제반 수속,

고인이 남긴 빚 처리, 남겨진 가족의 생계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연락 및 각종 수속의 처리 완료, 고인의 유품 정리나 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직후의 수속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자살로 친족을 잃은 경우 남겨진 사람은 사인이 알려지기를 꺼려해 필요한 절차를 망설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절차,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등의 기간이 설정되어있는 것도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제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기록된 책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III. 참고 자료 3. 자살 유가족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의 기초 지식 3-1. 자살 유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속, 표 1. pp.21-22 참조).

(2)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2017년 7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은 자살 유가족이 전국 어디에 있어도 관련 시책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에 사후 수속 절차를 포함하여 자살 유가족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와 상담센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각 도도부현·시정촌이 「자조모임」에 관한 정보 제공과 법적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상담센터의 정보 제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관련 정보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나 그룹 활동의 장을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모임」이라고 합니다. 전국 규모의 민간 단체도 있고 유가족 당사자 본인들이 참여하는 자조 그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전국 자살 유가족 연례회」과 유가족 당사자와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살 유가족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모임의 활동 내용 및 개최 방법은 주최 단체마다 다르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모임을 진행하는 규칙 등도 단체마다 다릅니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 여부도 각기 달라 당사자끼리만 운영되는 단체도 있으며,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룹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개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모임을 검증된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두 곳 이상의 시정촌이 협력하여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모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 지자체 및 민간 단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III.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3. 두 시정촌 협력으로 개최되는 「자조모임」 p.17 참조).

2) 자살 유가족의 법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자살 유가족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남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의 하나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조언과 상담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는 ① 상속에 관한 판단과 숙려 기간의 연장, ② 과로 자살에 의한 산재 신청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③ 임대 물건 내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배상 문제와 소유 물건 내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의 고지 의무 문제, ④ 자살 면책 조항 등 생명 보험금 수령 문제, ⑤ 다중 채무 문제, ⑥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실명 공개 등의 미디어, 인터넷 관련문제 ⑦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문제, ⑧ 철도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 등이 있습니다(III. 참고 자료 3. 자살 유가족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 기초 지식 pp.21-31 참조).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살 유가족에게 행정 담당자는 자살 유가족 지원에 협조적인 변호사나 사법서사(법무사)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와 상담센터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① 채무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변호사회 (다중 채무 상담) ※ 첫 상담은 무료인 곳도 있음
- 사법서사(법무사)회 (다중 채무 상담) ※ 첫 상담은 무료인 곳도 있음
- 일본사법(법무)지원센터 [법테라스]
- 자살 유가족지원 변호인단
- 도도부현의 소비생활센터
- 시정촌의 소비생활 상담창구
- 복지사무소 (생활보호)
- 사회복지협의회 (생활복지자금 대출 제도 등)

② 산재 관련 (과로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

- 자살 유가족 지원 변호인단, 과로사 변호인단
- 산업보건추진센터
- 지역산업보건추진센터
- 산재병원
- 상담기관

[출처]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 상담담당자를 위한 지침~」 (2009 년) pp.10-11 일부 수정

또한 자살 유가족들 중에는 몸 상태나 편견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자살 유가족 생활을 재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 담당자는 자살 유가족에게 법적인 해결책은 법적 권리로 인정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법적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3) 정보의 균등화²에 대한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균등화를 추진하려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역할 분담과 민간 업자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 유가족 뿐만 아니라 유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사후 수속과 담당 창구가 소개된 전단지 등을 전달할 경우 시정촌의 담당 창구에서 전달하는 방법 외에 자살 유가족의 경우는 검시 때, 경찰관이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에 대하여 더 이른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시정촌, 도도부현과 경찰, 민간 업자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공공 기관의 역할

자살종합대책대강에서는 지역에서 자살 대책 사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를 도도부현과 정부가 지정한 도시(정령 지정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관내 시정촌의 지역 자살대책의 진척 관리와 지원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살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체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가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자조모임」의 개최 및 자조 그룹, 지원 그룹의 지원과 유가족이 요청하는 상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도도부현

도도부현의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은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가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는 운영 사업 실시 요강에서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 방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자살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수집하여, 그 제공에 대해 시정촌을 지도함과 동시에,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해 시정촌에

2 균등화는 전국 모든 관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 대응하기 힘든 사례를 상담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계하면서 해당 시정촌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나 조언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도부현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정촌의 대책에 관한 정보 수집과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전단지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공공 기관과의 연계나 조정도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에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과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의 장을 설정하는 일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시정촌에서는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도부현이 현 내의 상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장소를 물색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조모임」의 여러 시정촌에 의한 공동 개최 중개 및 조정을 도도부현과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가 담당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시정촌

자살이 일어난 직후의 호적이나 매장과 관련된 수속은 시정촌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자살 유가족 지원을 시정촌에서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상담 또는 「자조모임」과 「유가족 모임」 개최입니다. 그러나 「자조모임」 개최는 인구 규모가 적은 시정촌에서는 단독 개최가 어렵고 아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모임에 참여하기 불편하다는 자살 유가족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한 곳의 시정촌에서만 개최하지 말고, 인근 시정촌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조모임」 개최는 민간 단체가 시정촌과 연계하여 시정촌의 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 공공 단체의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참가비 징수와 스텝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던 경비를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조모임」 외에도 간단한 나들이나 식사 모임 등의 특별한 행사가 기획되는 경우도 있고, 유가족 간의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정촌의 홍보로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홍보면에서 협력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해서 시정촌은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와 연계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III.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5. 자살 유가족 동경 자조모임 「미즈베(물가) 모임」 과 센다이의 자조모임 「아이(썩빛) 모임」 p.19 참조).

3. 학교와 직장에서의 사후 대응 촉진

(1) 학교에서의 자살 사후 대응 촉진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해당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끼리 사후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가족의 마음으로 유가족의 뜻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적절한 지원 단체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살 사후에 학부모를 포함한 관계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관계자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정확한 정보 공개와 함께 다른 학생들의 마음 케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직장에서의 자살 사후 대응 촉진

직장에서 직원이 자살로 사망할 때 주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살이라니 믿을 수 없어」, 「왜 상담해 주지 못했을까」, 「왜 막지 못했을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자살하다니」와 같은 감정과 함께 자살한 고인과 절친했던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단지 「직장」이라고 해도 실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나 유의해야 할 점, 유가족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 또한 자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업무 환경 및 근무 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Ⅲ. 참고 자료 4. 직장에서의 자살 사후 대응 촉진과 유의점 pp.32-33 참조).

4. 유가족을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민간단체, 민간업자의 자질 향상

자살 종합 대책 요강에는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공공 기관에서 자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유가족 대응에 관한 지식 보급을 촉진한다」고 했으며, 초기에 자살 유가족과 직접 대응할 가능성이 많은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 등의 유가족에 대한 대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 사후 직후에 유가족을 접할 수 있는 경찰관, 소방 공무원 등의 적절한 대응

자살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 직접 유가족과 접할 가능성이 많은 공공기관의 직원인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등은 자살 유가족에게 정중하게 대응하도록 유념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자살대책 추진센터와 경찰·소방 등 공공 관이 적절한 연계를 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 유가족을 접할 수 있는 민간업자의 적절한 대응에 관한 이해의 촉진

자살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후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자로는 시정촌 외에 다른 민간 업체(장례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고충상담센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살 유가족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의 의식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살 유자녀의 지원

자살종합대책대강은 「지역의 유자녀 등 자조 집단 등의 운영, 상담 기관의 유자녀나 그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일, 아동·학생들과 평소 접할 기회가 많은 학교의 교직원을 중심으로 아동 상담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의 보건사 등에 의한 유자녀에 관한 충실한 상담 체제 및 지원까지 포함하여 교육 상담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살 유자녀란 가까운 친척을 자살로 잃은 미성년자를 지칭하며, 성장 과정에서 가족 등의 자살 관련 행동을 가까이 경험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자살 유자녀가 아동·학생이면 지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부모와 협의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자살 유자녀 관련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교직원은 적절한 지식과 대응 방법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1) 자살 유자녀가 처한 입장과 기본적인 대응 방법

아동기와 사춘기 아이들의 사별이라는 상실 경험에 대한 반응은 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나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보여지는 특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유자녀가 주된 가계 수입을 담당해 온 부모를 잃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이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살 유자녀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일상 생활을 안정시키는 「삶을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2) 자살 유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자살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비탄(Grief)

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들의 비탄(Grief)을 케어하기 위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모임」의 개최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자살 유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동기나 사춘기에 가족의 자살을 경험하는 것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속마음이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인이나 지인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아시나가 육영회」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같은 경험을 한 또래들에 의한 「자조모임」을 목적으로 「고교 장학생 모임」을 비롯해 나이와 소속별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어 대학생이 된 아시나가 육영회 졸업생이 참여하여 유자녀들의 고독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조 및 연대」를 중심으로, 졸업생이 롤모델이 되어 유자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를 포함하여 이러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살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6. 아시나가 육영회 「고교 장학생 모임」 p.19 참조).

6. 종합적인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1) 자살 유가족의 자조 그룹 지원이나 민간 단체에 의한 「자조모임」의 운영 지원

자살종합대책대강에서는 「지역의 유가족 자조 그룹의 운영, 상담 기관 알리기, 정신 보건 복지 센터와 보건소의 보건사가 유가족과의 상담 체제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의 대부분은 소중한 사람의 자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서 의문, 수치, 죄책감에 빠져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심리적 고립의 지속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회복과 재기를 막게 됩니다.

자살 유가족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과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모임의 개최도 중요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의 하나입니다.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모임은 유가족들이 누구에게도 비난 받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입니다. 이 모임의 개최는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공공 단체가 주로 개최 장소 확보와 홍보를 담당하고 민간 단체가 진행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곳도 있습니다 (Ⅲ.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7. 「자조모임」 「유가족 모임」의 개최, 운영에 대하여 pp.19-20 참조).

(2) 사회 전체의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계발활동

공공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시키고, 자살 유가족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잘못된 사회 통념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이라든지 「최악의 불명예」 등과 같은 편견에 근거한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의 이해를 위한 계발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 전체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심포지움 개최 및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행정 기관 직원의 정기적인 연수 개최, 학교에서의 자살 유가족 강연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 자살 종합 대책 관련 계발 활동에서도 자살 유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더욱 더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Ⅲ 참고 자료

1. 용어에 관하여

□ 1-1. 자사(自死)·자살(自殺)의 표현에 관하여

자살 종합 대책 대강에는 「자살은 그 대부분이 내몰린 끝의 죽음」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자살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간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이 목숨을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시도」 「자살기도」 「자살 신호」 등의 표현은 자살을 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자살」이라는 말은 범죄를 상기시킬 수도 있고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 하여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자사」로 바꿔 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이나 유자녀에 대한 표현은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自死) 유가족」 「자사(自死) 유자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을 위한 전단지 등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자사(自死)로 잃은 사람에게」라는 유가족의 심정을 배려한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따른 세심한 구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2. 비탄 (Grief)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사별로 잃으면 정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신체와 행동에 여러가지 영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실에 의한 슬픔의 반응과 변화를 최근에는 비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탄은 사별 뿐만 아니라 큰 상실감으로 인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내면의 갈등과 고뇌입니다. 정신면, 신체면, 행동면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생관, 종교관에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에 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집약될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뿐만 아니라 유가족 전반과 관련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 슬픔을 표현하는 법, 슬픈 정도, 기간은 다양하며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이 각기 다르다.
- 사인 뿐만 아니라 사망했을 때의 상황,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연령, 성격, 생활 환경, 생육력(키운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된다.
- 「좋다」 「나쁘다」 또는 「올바른 슬픔」도 「잘못된 슬픔」도 없다.
- 타인의 슬픔과 비교할 수 없다.

□ 1-3. 비탄의 변화 가능성

비탄은 다양한 고뇌와 갈등을 거쳐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인 애도의 작업을 통해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동료나 마음 편히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정신면 :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큰 고통을 감내하며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다.
- 신체면 : 건강 유지 및 회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
- 행동면 : 새로운 인간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지되어 있던 활동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 사고면 : 사회와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2. 자살 유가족 지원 관련 참고 자료

□ 2-1. 자살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자살 유가족 지원은 유가족의 요구에 맞지 않는 대응이나 무리하게 캐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가족의 심리와 반응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응한다.
-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배려된 조용한 장소에서 접촉한다.
-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의 기분을 제대로 받아들이는)하고 온화하게 대응한다. 또한 상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잡는다.
- 판단을 섞지 않는 태도 (유가족의 생각에 해석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 보는 자세)를 견지한다.
- 유가족 스스로 원하는 지원을 한다(유가족의 주체성을 존중한다).
- 유가족의 마음으로 대한다(우선 함께 있어준다).
- 혼란스러워 하는 유가족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요구를 명확히 한다.
- 정신 건강 문제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경제, 교육, 재판, 편견, 신앙 등 구체적인 문제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듣는다.
-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라」 는 지원 표명과 약속.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힘내」라는 격려와 「왜? 막지 못했나」는 등의 원인 추궁.
- 형식적인 위로.
- 유가족인지 확인하려 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무리하게 캐내는 것.
(이차적인 상처가 될 우려가 있으니 삼가해야 함)
-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생각과 의견 강요.
- 유가족이 모두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짓는 대응.
- 무리하게 감정을 토로하게 하려는 태도.
- 유가족 모두가 똑같다는 언동이나 대응.

[출처]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자 매뉴얼(2009년) pp.8-9

□ 2-2. 동경도 미나토구와 이타바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는 사망 신고 접수 창구에서 사후의 여러가지 절차가 설명된 책자를 유가족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상담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 유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미나토구와 이타바시구에서는 홈페이지에서도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타바시구의 홈페이지에서는 「자사(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라는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유가족을 위한 모임 (자조모임) ● 유가족을 위한 상담전화
- 유자녀에 대한 지원 ● 부채와 상속 · 법률 · 산재보상 · 취로 · 경영 · 복지 등의 상담창구
- 사망신고 후 필요한 공적 · 사적인 절차
-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변화

[도쿄도 미나토구 홈페이지]

<http://www.city.minato.tokyo.jp/chiikihoken/ikiru/jisatutaisaku.html>

※ 유가족 전원에게 배포되는 책자는 웹상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경도 이타바시구 홈페이지]

http://www.city.itabashi.tokyo.jp/c_kurashi/056/056610.html



□ 2-3. 두 시정촌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자조모임」

시정촌 차원의 협력 사례로서 도쿄도 히노시와 타마시의 2 개의 시가 공동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격월로 자조모임을 개최하던 히노시와 그 운영에 협력해 온 민간 단체에 인근의 타마시가 합류하여 상호 협의 끝에 탄생되었습니다. 히노시는 홀수달, 타마시는 짝수달에 개최하며, 명칭은 「히노시·타마시 자조모임」이며, 행사장은 참가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타마시에 있는 세키도 공민관으로 정했으며 행사장 확보·홍보·문의 대응을 히노시·타마시에서 담당합니다. 당일의 그룹 운영은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 대상 지역이 넓어져 참가하기 편해진 점, 즉 일정 수의 참가자가 확보되어 보다 효율적인 개최를 할 수 있는 점, (2) 각 시는 격월 개최지만 매월 개최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3) 활동 기간이 긴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속성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점이 참가자나 운영 측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2-4. 자살 유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 4 가지의 특수성

자살 유가족에게 법적 지원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특수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권리 관계의 복잡성 : 법률 문제를 많이 떠안은 채 자살하게 되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방법(임대 주택 내부에서의 자살, 철도 사고 자살 등)에 따라 법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유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채권 채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은 몸 상태나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히 궁금해하는 문제 외에는 법률 실무자와 상담을 하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유가족에게 법률 상담을 의뢰 받았을 때 「분노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강하게 주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 같다는 말에 휘둘러 안이하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회사에서 손해 배상액을 줄여줄 수도 있고, 상속 포기로 플러스 재산(예금, 토지, 직장 문제가 있는 경우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잃기 때문입니다.

(2) 자살 유가족 자신의 법률 관계 : 자살 유가족 자신의 법률 관계에 대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인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권리 관계 상속 여부입니다. 자살 유가족에게 들

은 이야기로 피상속인인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법률 문제를 다수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즉시 가정 법원에서 숙려 기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 915 조 1 항 단서).

또한 자살 유가족 고유의 법률 문제로는 산재 청구, 생명보험금 청구,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빛과 임대차 계약의 연대 보증,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자살 유가족 소유의 물건 내에서 사망한 경우의 매각 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속 문제와는 달리,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 유가족 자신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 문제와 그 외 다른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자살 유가족의 몸 상태나 심리적 문제 : 자살 유가족이 가족의 자살로 인해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결과, 우울증이나 PTSD 등 정신 질환을 앓다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의 몸 상태나 심리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법률 실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률 문제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강한 자책감과 「법적 절차로 더 이상 가족을 떠올리는게 괴롭다」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문제인데도 방치해 놓는 자살 유가족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할 때나 소송에서의 심문 등, 심리적 압박이 특히 가중되는 시기에는 자살 유가족의 마음 상태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4) 자살에 대한 편견 등의 문제 : 아직도 남아있는 자살에 대한 편견으로 자살 유가족은 자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편견은 자살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 사실을 외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자살 유가족에 대하여 다른 자살 유가족이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자살의 원인을 자살 유가족들끼리 서로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이나 예금밖에 없는 단순한 상속 사건에서도 양측의 감정 싸움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처】 오고시 데루유키(2016) 「자살 유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의 유의점」, 『법률광장』 제 69 권 제 10 호, pp.41-49 의 일부 발췌 · 수정

□ 2-5. 자살 유가족 동경 자조모임 「미즈베(물가) 모임」 과 센다이의 자조모임 「아이(썬빛) 모임」

「미즈베(물가) 모임」은 2009년 2월에 설립되어 그해 3월부터 매월 한 번씩 자조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월 4번째주 일요일 오후에 세타가야구와 시부야구에서 교대로 개최하며 먼저 모임 취지 설명 후, 참가자의 자기 소개가 끝나면 2~4 그룹으로 나누어 「자조모임」을 테마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종료 후에는 장소를 바꾸어 심신을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쿨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나들이나 식사 모임을 개최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개설하여 자사(自死)에 대한 정보도 게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의 대부분은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유가족임을 감안하여 2006년에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자살 유가족 자조 그룹인 「썬빛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내 전지역의 고령자, 신체장애자, 어린 자녀가 있는 유가족, 간병과 일에 쫓겨 사는 유가족들의 참여도 촉구하기 위해 현내 6개 지역에서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모임인 「츠무기 모임」도 센다이시, 이시노마키시, 게센누마시에서 시작되어 쓰나미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교류 장소로 이용하면서 그와 연계하여 지진 유가족 모임을 이와누마시와 이시노마키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세상을 떠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유가족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2016년도판 「자살 대책 백서」 p.130 및 2014년도판 「자살 대책 백서」 p.149

□ 2-6. 아시나가 육영회의 「고교 장학생 모임」

고교 장학생 모임은 매년 여름 방학 기간에 지역별로 전국 11곳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700명 이상의 고등학교 장학생이 참여하여 650명 이상의 대학·전문학교 장학생이 고등학생의 오빠, 언니가 되어 각 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용은 처음에 게임이나 야외 활동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고교생끼리 친교시간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나를 말해보자」라는 테마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 괴로웠던 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생, 친척, 친구, 이웃과의 사건 등을 함께 자리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친구들도 자신과 같은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어 자신이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조모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출처] 아시나가 육영회 홈페이지 <http://www.ashinaga.org/activity/meeting/>

□ 2-7. 「자조모임」과 「유가족 모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자조모임」과 「유가족 모임」의 집회를 개최·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이 갖고 있는 성격과 기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와 회의 진행 규칙, 전문가 참여 여부 등이 다릅니다. 「자조모임」과 「유가족 모임」에 요구되는 환경은 참가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주는 모임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당사자끼리의 모임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도 참가자가 진심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룹을 원하지 않는 유가족에게는 개인 면담이나 전화 상담 등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최(실시)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건 참가자들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회의 진행 규칙, 전문가나 당사자 이외의 스텝 유무, 운영 주체와 그 기본 방침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조 그룹은 자살 유가족 당사자끼리 모여 경험과 소원을 서로 이야기하며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참가자를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살 유가족 중 친족 등)들에게만 국한시켜 자원봉사자나 전문가가 참가할 수 없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조모임」이외의 시간, 예를 들면 쿨다운 시간과 「자조모임」의 친목회 등은 참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조모임」의 진행자는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한 해석과 비판, 조언과 지도 등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원 그룹(민간 자원봉사자, 변호사회 등 전문가 조직, 민간단체, 보건소 등의 공공 전문 기관, 지자체 등)이 「자조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촉진자(facilitator)의 양성부터 착수하여 양질의 촉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민간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자살 유가족연락회 (<http://www.zenziren.com>)

전국 자살 유가족종합지원센터 (<http://www.izoku-center.or.jp/>)

자살 유가족 케어단체 전국네트워크 (<http://www.jishicare.org/>)

3. 자살 유가족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의 기초 지식

□ 3-1. 자살 유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속

표 1. 일반적으로 유가족이 해야 할 절차 목록
(개개인에 따라 목록과 다를 수 있음)

| 신고 명칭· 신고처 | 수속처 | 수속 기한 | 필요한 서류 |
|-------------------|------------------------------------|---------------------------------|--|
| 시정촌 | | | |
| 사망 신고 | 사망장소, 본적지, 주소지 중 한 곳 | 사망한 날로부터 7 일 이내(국외인 경우 3 개월 이내) | 24 시간 접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사체 화장 허가 신청서 | 사망 장소, 본적지, 주소지 중 한 곳 | 사망 신고와 함께 진행됨 | 사체 화장 허가증 신청서 |
| 연금 수급 정지 | 사회 보험 사무소 또는 시정촌의 국민연금과 | 사망 날로부터 10 일 이내 | 연금수급권자 사망신고, 연금증서 또는 제적등본 |
| 간병보험자격 상실신고 | 시정촌 복지과 | 사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 |
|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청구 | 시정촌 국민연금과 | 사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 | 국민연금 유가족기초연금 재정청구서, 연금수첩,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원천징수표, 인감, 송금계좌 번호 |
| 국민연금 유가족 기초 연금 청구 | 시정촌 국민연금과 | 사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 | 국민연금 유가족기초연금 재정청구서, 연금수첩,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원천징수표, 인감, 송금계좌 번호 |
| 국민연금 미망인연금 청구 | 시정촌의 국민연금과 (결혼 10 년 이상의 자녀가 없는 아내) | 사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 | 국민연금 미망인연금 재정 청구서, 연금수첩,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소득증명서, 인감, 송금계좌 번호 |
| 세대주 변경 | 각 연금사무소 | 사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 세대주변경 신고 |
| 국민건강보험의 장례비 |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과 | 사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 | 장례비 지급신청서, 건강 보험증, 인감, 송금계좌번호, 장의사의 영수증 |
| 고액 요양비 신청 | 건강보험조합 또는 사회보험사무소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과 | 의료비 지불일로부터 2 년 이내 | 고액 요양비 지급신청서, 고액 의료비 환급안내, 건강보험증, 자기부담 의료비 영수증, 인감, 송금계좌 번호 |

| 신고 명칭· 신고처 | 수속처 | 수속 기한 | 필요한 서류 |
|--------------------------------|----------------------|-----------------------------------|---|
| 사망자 주소지의 가정 법원 | | | |
| 유언장 검인 | 사망자 주소지의 가정 법원 | 가급적 빨리 | 유언장 원본, 유언자의 호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수유자의 호적 등본 |
| 상속 포기, 상속에 관한 숙려 기간 연장 신청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 법원 | 자기를 위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포기 신청서 또는 기간 연장 신청서, 개정 원호적, 호적등본, 제적주민등본 |
| 근무처 관할 사회보험사무소 및 건강보험조합 | | | |
| 후생연금의 유가족 후생연금 청구 | 근무처 관할 사회보험사무소 | 사망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 유가족 후생연금 재정 청구서, 연금 수첩, 호적 등본, 사망 진단서 사본, 소득증명서, 주민등본 사본, 인감, 송금계좌번호 |
| 건강보험 매장료 청구 | 건강보험조합 또는 사회 보험사무소 | 사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건강보험 장례비 청구서,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사본, 인감, 송금계좌번호 |
| 고액 요양비 신청 | 건강보험조합 또는 사회 보험사무소 | 의료비 지불일로부터 2년 이내 | 고액 요양비 지급신청서, 고액의료비 환급안내, 건강보험증, 자기 부담 의료비 영수증, 인감, 송금계좌번호 |
| 근무처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 | | | |
| 산재보험 유가족 보상급여 | 근무처를 관할하는 노동 기준 감독서 | 사망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 유가족보상 연금지급청구서·유가족 특별지급금 지급신청서·유가족 특별연금 지급신청서, 호적 등본, 사망진단서, 원천징수표,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던 증명서류. 생계 유지관계가 없는 경우는 유가족 보상 일시 |
| 산재 보험의 장례비 | 근무처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 사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장례비 청구서, 사망 진단서 사본 장례식 실시 증명서 |

3-2. 상속에 관하여

3-2-1.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법률 관계를 그대로 인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3-2-2. 단순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그대로 상속하거나,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입니다.

단순 승인 : 플러스 재산³이나 마이너스 재산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상속 포기 : 플러스 재산도 마이너스 재산도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 승인 : 플러스 재산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재산을 승계한다.

3-2-3. 숙려 기간에 주의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살 사실 및 자기가 상속인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2-4. 연장 수속의 활용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은 자살 직후의 유가족에게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 내에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평가하지 못할 경우 숙려기간 중에 가정 법원에 숙려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차분히 생각할 시간과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 신청은 자살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비용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URL 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ourts.go.jp/saiban/syurui_kazi/kazi_06_25/

3 플러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4 마이너스 재산에는 채무(빚, 손해배상의무 등)가 있습니다.

3-2-5. 상속 포기는 신중하게

상속 포기를 하면 플러스 재산도 마이너스 재산도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회사에서 과로에 의해 임대 건물 내에서 자살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과대 평가하여 상속을 포기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2-6. 장례비를 내면 상속 포기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숙려 기간 동안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① 자살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동산 중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동산의 처분(유품인 의류, 식기, 책 등의 신변 물건 등), ②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에서의 장례비와 묘지 사용료, ③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의 재산에서 지불하는 경우 등은 단순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속 포기 효과가 인정됩니다.

□ 3-3. 과로 자살에 관하여

3-3-1. 산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과로 자살이 발생한 경우 ① 국가에 대한 산재 신청과, ②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의 두 가지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 두 절차는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고 양쪽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재에 의해 자살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산재가 인정되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2. 초기의 증거 수집이 중요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부하를 뒷받침할 증거는 회사 측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락, 소멸되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파기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회사 측의 증거를 수집하는 증거 보전이라는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과로 자살이 의심될 경우, 먼저 과로 자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3-4. 임대 물건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3-4-1. 바로는 지불하지 않는다

임대 물건에서 자살을 한 경우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이나 보증인이었던 자살 유가족에게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은 상속 포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청구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곧바로 돈을 지불하지 말고 반드시 내역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3-4-2. 이런 청구는 과대 청구

임대인의 손해 배상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원상복구 비용

임대인은 임대 물건 내부에서 자살한 것을 이유로 리폼 비용 등의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 교통성의 지침에 따르면, 원상 복구는 「임차인의 거주 또는 사용으로 발생한 건물 가치의 감소 중, 임차인의 고의·과실, 선관주의 의무위반, 기타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훼손을 복구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현관에서 자살을 했을 경우, 자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욕실과 부엌의 리모델링 비용을 원상 복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 향후 임대료

임대인은 자살로 인해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공실이 되는 것을 이유로 공실 기간의 향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임대료 기간에 대해서 재판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 실무 상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향후 임대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5년분 등 재판 실무를 크게 뛰어넘는 향후 임대료의 청구는 과도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평가액의 감소액

최근 임대인의 자살로 인해 부동산 평가가 떨어졌다 하여 그 감소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액이 수천만 엔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평가액의 감소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자살로 사망한 임차인 혹은 동거인이 전매를 예견하고 있던 경우 등 예외적인 드문 경우에만 인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의 대부분은 과도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3-5. 철도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의 문제

3-5-1. 고액의 비용을 청구?

철도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 자살 유가족에게 수천만 엔의 고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액이 수천만 엔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운송 비용과 특급 요금 환불

도시의 출퇴근 시간이면 1,000 만엔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의 한밤 중 사고라면 몇 만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

청구 금액이 고액이 되려면 예를 들어 자동차로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 건널목과 열차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이 없으면 수리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손상이 작으면 수십만 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인건비

철도 회사는 사고 수습처리를 한 역무원의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몇 만 엔에서 몇 십만 엔인 경우가 많습니다.

3-5-2. 자살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경우

자살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능력자로 판단되면 상속인인 자살 유가족이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보호 감독을 하고 있던 자살 유가족이 철도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를 직접 지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보호 감독을 하고 있던 경우 손해 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3-6. 생명 보험의 자살 면책 문제

3-6-1. 자살인 경우 생명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책임 시작일 (일반적으로 ① 계약신청서에 서명·날인, ② 의사에 의한 검사 또는 공지, ③ 1 회 보험료 지불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자살 면책 특약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면책 기간 내에 자살을 했을 경우 자살임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보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6-2. 면책 기간 내의 자살도 보험금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자살 면책 특약 기간 중에 자살한 경우라도 정신 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던 것으로 평가되면 자살 면책 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 내지 현저하게 감소됐는 지의 여부는 재판 실무 상 ① 정신질환이 발병하기 전의 원래의 성격과 인격, ② 정신 장애의 증상과 정도, ③ 자살 시도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행동 및 정신 상태, ④ 자살 시도 행위의 형태(사망 수단과 방법), ⑤ 자살 동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6-3. 입증 방법은?

자살 유가족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 내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라면 진료 기록 카드 등의 의학적 자료, 주위 사람들의 증언, 자살 방법이나 상황,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노동기준 감독서가 만든 자료 등 필요 자료를 조기에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3-7. 다중 채무 문제

3-7-1. 플러스와 마이너스 재산을 고려하자

소비자 금융에서의 대출 등 자살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 플러스 재산이 없을 경우는 상속 포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이 존재하거나 과로 자살로 인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등 플러스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숙려 기간을 연장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7-2. 자살 유가족이 보증인일 경우

자살 유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채무자의 보증인일 경우, 자살 유가족이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보증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증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자살 유가족은 파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습니다.

3-7-3.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청구서가 배달되었던가, 자살 후에 배달되는 청구서로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범위의 자살 유가족이라면 JBA(전국은행 개인신용정보센터), JICC(일본신용정보기구), CIC(할부판매법, 대금업법지정 신용정보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8. 의료 과실 문제

3-8-1. 병원과 담당 의사의 자살 방지 의무 위반

병원과 담당 의사는 진료 계약에 따라 환자의 자살 방지 의무(이하, '자살방지 의무'라함)를 일반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병적 장애 및 불안정성을 다양한 치료를 통해 제거하고, 가능한 한 환자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여 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치료의 특수성에서 다른 의료 현장보다 의사 판단의 재량이 넓다고 보기 때문에 병원과 담당 의사의 자살 방지 의무 위반 입증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3-8-2. 예견 가능성에 관하여

자살방지의무 위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예측 가능성(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과 결과 회피의무 위반(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했는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정신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판례 실무상 「절박한 자살 위험이 직전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9. 학생의 자살에 관한 문제 (집단 따돌림 문제 포함)

3-9-1. 학교의 법적 책임

학교는 학생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이하, 「자살방지 의무」라 함)를 일반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려면, 이 경우에도 자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집단 따돌림을 계속 당하거나 교사도 집단 따돌림 사실과 피해 학생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 학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9-2.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법적 책임

가해 학생 자신에게 책임 능력(12 세 전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자신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 자신의 책임과 더불어 보호자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3-9-3. 교사의 법적 책임

공립학교인 경우 공무원인 교사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사립 학교인 경우는 교사 개인에게 자살방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9-4. 사망 위로금 (재해공제 급부제도)

일본스포츠진흥센터의 재해 급부 제도는 학교 관리하에서의 학생의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재해 급여(의료비·장애 위로금 또는 사망 위로금의 지급)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의 관리 하에서 집단 따돌림, 체벌 기타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생긴 강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자살로 확인된 경우 사망 위로금 2,800 만엔이 지급됩니다.

3-9-5. 증거 수집에 관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의 생활 태도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는 학교가 만드는 사고보고서, 체벌보고서, 생활기록부, 조사서, 직원회의록 외에 학생이 자살한 후 만든 다른 학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에 따라 조직되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형사 사건(소년 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자살 유가족의 입장에서 가해 학생의 진술 조서 등의 증거를 열람·등사 할 수가 있습니다.

3-9-6.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

집단 따돌림 방지대책 추진법에서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제 4 조에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나 지자체에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책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교직원들은 학교 전체적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힘쓰고 동시에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에 대처할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때의 배경조사 매뉴얼[개정판] (2014년 7월 1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

학생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 조사의 실시 및 세부 조사로의 이행 판단과 상세 조사의 실시 등이 있는데, 상세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단 따돌림이 그 배경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및 평상시의 준비에 대해 본 조사 지침에 배경 조사의 노하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단 따돌림의 중대 사태 조사에 관한 매뉴얼 (2017년 3월 문부과학성)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의 이사장 및 학교의 기본 자세, 심각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 심각한 사태의 발생 보고, 조사 조직의 설치,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 조사 실시, 조사 결과의 설명·공표,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 및 지자체장에 의한 재조사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학생 자살이 일어났을 때의 긴급 대응 매뉴얼(2010년 3월 문부과학성)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때의 학교의 위기 대응 태세, 유가족 대응법, 정보 수집·발신, 보호자에 대한 설명, 심리치료, 학교활동(학교 재개 준비, 해당 학급에 전하는 방법과 학급의 애도 과정)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제삼자 위원회

집단 따돌림에 의한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 이사장(교육위원회나 학교법인)에게 집단 따돌림 사실을 통지하여 집단 따돌림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위원회는 학생에게 일어났던 일, 자살 원인, 학교의 대응, 학교의 자살 후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 조사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합니다.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조

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삼자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9-7. 인권 구제 신청 (법무국 등)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옹호위원회와 전화 상담 및 면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동경변호사회는 아동 인권 110 번이 마련되어 전화 상담과 면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3-10. 미디어 및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

자살 유가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스컴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실명을 보도하거나 아 파트 등에서의 자살에 대한 정보가 「사고 물건 사이트」에 게재되어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트 블로그의 관리자와 검색 엔진 운영 회사에 삭제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장에서의 자살 사후 대응 촉진과 유의점

□ 4-1. 전달 방법과 배려해야 할 대상

직장에서 직원이 자살했을 때는 먼저 장례식에 관계자가 참석한 후 합당한 사람이 직장에서 담담하게 그 사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계자에게 알립니다. 고인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는 일은 피하고 그 고인과 관계가 깊었던 사람끼리 모여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남겨진 사람의 심리적 부담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 4-2. 직장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때의 유의점

직장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족도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인과 강한 유대 관계가 있던 사람
- 정신 질환에 걸린 사람
-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
- 첫 발견자, 이송자
- 고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
- 자살이 일어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
- 장례식 때 특히 힘들어했던 사람
- 지인의 자살이 발생한 후 태도가 바뀐 사람
-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직장에서 책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동요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놓치지 않고 전달한다.
-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설명해 둔다.
- 지인의 자살을 경험한 후의 감정을 다른 동료들과 나눈다.
- 자살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는 사람을 관리한다.
- 자살이 일어난 문제점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

[출처]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노동자의 자살예방매뉴얼 작성검토위원회
「직장에서의 자살 예방과 대응」 2010년 개정 제 5 판 일부 개정

<http://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anzen/dl/101004-4.pdf>

□ 4-3. 유가족에 대한 대응

직장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진정성 있게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직장에서도 소중한 동료로 떠나 보내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직장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살 방지 조치는 취했는지, 과로 자살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러 많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성실한 태도로 냉정하게 사실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답변하는 등 어설픈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 고인이 가족의 버팀목인 경우는 수속 절차 등에 대해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케어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 4-4. 직장 환경이나 업무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살과 산재 인정

직장에서의 자살에는 직장 환경이나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살이 많이 있어 근로자의 자살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의 보급과 계발이 특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본인이나 주위의 이해와 조기 발견 방법, 산업의와 전문의에게 우울증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이어주는 타이밍과 직장에서의 개입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관계자 모두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5. 자살 유자녀 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 5-1. 자살 유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자살 유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학생지원기구
- 교육위원회(취학보조, 장학금제도)
- 아시나가 육영회, 기타 민간육성단체

□ 5-2. 자살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자, 상담 창구, ※이바쇼 조성사업 등

학교 현장에는 아동이나 학생, 보호자에 대해 임상 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살리면서 상담 등의 지원을 하는 학교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아시나가 육영회

매년 여름, 고교생·전문학교생·대학생 유자녀(자살에 한정되지 않음)를 대상으로 한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III. 참고 자료 2. 자살 유가족지원에 관한 참고 자료 2-6. 참조).





● 「가까운 사람을 잃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모임」

NPO 법인 전국 자살 유가족 종합지원센터(동경도와 공동 개최사업)

2013년 1월부터 동경도 중앙구에 있는 세이로카 국제병원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활동으로, 6세에서 18세까지의 부모와 형제를 잃은 유자녀와 그 보호자들이 모여, 전문 직을 포함한 훈련 받은 스텝들이 모임을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유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연령에 따라 각각의 사별에 대해 매주 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바쇼 : 사회생활의 거점이 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장소 뿐만 아니라 ①편안해서 정신적으로 안심하고 안정할 수 있는 곳 또한 인간관계, ②역할이 주어져서 소속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 ③타인과 사회와의 연결이 있는 곳, ④자기 존재감·수용감을 느끼게 하는 곳 등을 의미합니다.

◆ 참고문헌 / 참고자료 (인용순)

| | |
|---|---|
| <p>1 자살 유가족 지원 상담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 자살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케어~ [2008년도 후생노동과학 연구비 보조금 마음의 건강과학연구사업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의 케어에 관한 연구 2009년 1월] http://www.mhlw.go.jp/bunya/shougaihoken/jisatsu/dl/03.pdf</p> |  |
| <p>2 2016년판 자살대책백서 [후생노동성 2016년 7월] http://www.mhlw.go.jp/wp/hakusyo/jisatsu/16/index.html</p> |  |
| <p>3 2017년판 자살대책백서 [후생노동성 2017년 7월] http://www.mhlw.go.jp/wp/hakusyo/jisatsu/17/index.html</p> |  |
| <p>4 직장에서의 자살 예방과 대응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노동자의 자살 예방 매뉴얼작성 검토위원회 2010년 개정 제 5판] http://kokoro.mhlw.go.jp/brochure/worker/files/H22_jisatsu_yobou_taiou.pdf</p> |  |
| <p>5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자살 유가족 편집위원회 · 아시나가 유희영 편, 산마크 출판, 2005년]</p> | |

◆ 자살 대책의 최신 정보(연수 포함)를 얻기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

| | |
|--|---|
| <p>일반사단법인 전국 자살 유가족 연학회 http://www.zenziren.com/</p> |  |
| <p>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https://jssc.ncnp.go.jp/</p> |  |
| <p>자살 유가족 지원 단체 전국 네트워크 http://www.jshicare.org/</p> |  |
| <p>자살 유가족지원 변호인단 http://www.jshiizoku-law.org/</p> |  |
| <p>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전국 자살 유가족 종합지원센터 http://www.izoku-center.or.jp/</p> |  |
| <p>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링크 http://www.lifelink.or.jp/hp/top.html</p> |  |

[편집 책임자]

| | |
|----------|------------|
| 모토하시 유타카 |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
| 후지타 코우지 |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

[편집 협력자]

| | |
|----------|--------------------------|
| 카네코 요시히로 |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
| 마스나가 히로코 |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
| 사키사카 가야코 |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2018 년 3 월) |

[전문 위원]

| | |
|-----------|-------------------------------------|
| 아라이 히사코 | 동경도 미나토구 미나토 보건소 건강추진과 보건지도 담당 |
| 이시쿠라 히로코 | 「마음의 카페 교토」 대표 |
| 오고시 데루유키 | 변호사법인 라이프 파트너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스기모토 나오코 | NPO 법인 전국 자살 유가족 종합지원센터 대표 |
| 다나카 사치코 | 일반사단법인 전국 자살 유가족연락회 대표이사 |
| 츠지모토 데츠시 | 시가현 정신보건복지센터 소장 |
| 무카사 아키코 | 히로시마 국제대학원 심리과학연구과 후쿠오카현 스쿨 카운셀러 |
| 야마구치 가즈히로 | NPO 법인 자살 유가족지원 네트워크 Re (알·이) 대표 |

[담당 사무국]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번역 · 감수]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박혜선